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병훈 의원 발의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2613 |
|----------|------|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8월 11일

발 의 자 : 문병훈 의원(1명)

찬 성 자 : 권수정, 김기대, 김정환,
김제리, 김종무, 박기열,
박기재, 박상구, 박순규,
송아량, 양민규, 유정희,
이성배, 이영실, 장상기,
전석기, 홍성룡 의원(17명)

1. 제안이유

- 개정된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(법률 제18314호, 2021. 7. 20. 일부개정, 2021. 9. 21. 시행)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상향된 경우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하고,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사항을 규정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촉진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을 신설함(안 제7절 신설).
- 나.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함(안 제44조의2 신설).
- 다. 구청장에게 관리계획 수립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5조제3항 신설).

라. 소규모재개발사업에서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78조에 따라 시·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의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정함(안 제50조의2 신설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제7절(제44조의2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

제44조의2(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)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

제4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시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.

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법 제49조의2 제2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<p>〈신 설〉</p> |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제7절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</u></p> <p><u>제44조의2(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) 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</p> <p><u>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30으로 한다.</u></p> |
| <p>제45조(사업비의 보조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 <p>〈신 설〉</p> | <p>제45조(사업비의 보조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시장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에 소요되는 비용의 70퍼센트 범위에서 「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8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조할 수 있다.</p> |
| <p>〈신 설〉</p> | <p><u>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"시·도조례로 정하는 비율"은 100분의 50으로 한다.</u></p> |

문서번호

2021080900000004

미첨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문병훈 의원

담당 : 조도형 과장
이원상 팀장
박주용 예산분석관

접수일 : 2021.08.05

회신일 : 2021.08.10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목 차

I. 비용추계 요약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
예산정책담당관
Seoul Metropolitan Council

1. 비용발생 요인

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4조의 2(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) 및 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신설에 따라 임대주택 매입비용이 발생

※ 안 제45조(사업비의 보조 등)제3항 관리계획 수립비용은 2021년 1회 추경에 ‘관리계획(관리지역 지정) 수립비’ 예산 1,650,000천원이 기 편성되어 있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
- 안 제44조의2(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) 및 제50조의2(소규모재개발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) 신설에 따라 임대주택 매입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근거법령인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이 2021.7.20. 개정되어 2021.9.21. 시행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사업대상지도 미확정 상태로 매입규모, 매입시기, 매입가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추계가 곤란함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조도형

추계세제팀장 이원상

예산분석관 박주용

☎ 02-2180-7954

e-mail : pjooyong@seoul.go.kr